

—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7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7월 14일

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심사보류

마. 재상정일자 : 2000년 10월 19일

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 납골위주로 유도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를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명 칭 : 납골당의 명칭을 구미시 공설효친관(제2조)
- 관 리 : 법인에 위탁관리(제3조)
- 시설기준 : 일반실, 무연고실, 외국인실(제4조)

- 사 용 자 : 구미시내 거주자 및 거주 외국인, 시장이 인정한 자
- 사용기간 : 1회 → 15년(4회까지 연장가능) : 제8조
- 사용료 및 관리비: 구미시민 - 100,000원(제10조)
※ 타지역 - 200,000원
- 감 면 : 생활보호 대상자와 시장이 인정한 자(50%)

라. 참고사항

-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
- 금산군 공설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외 4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좁은 국토에 대한 늘어나는 매장 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자치단체마다 기간과 사용경비를 달리하고 있으나 주로 10~15년 단위 기간과 15,000~150,000원 사이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조례 저촉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